

2-2. 개편된 창업의 범위

1 창업의 정의 및 주요내용

- **(창 업)**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 **(창업자)**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의 개시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 신청기업의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개시일'로 통일하여 확인

- **(창업 제외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참고) 표준산업분류코드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참고) 표준산업분류코드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참고) 표준산업분류코드 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2 2020년 10월 이후 달라진 창업의 범위

- **(주요 개정방향)** 창업 인정범위를 단순화·명확화

- ▶ 법제상 정의가 없어 모호했던 '사업승계'를 삭제하고, **상속 및 증여로 범위를 명확화**
- ▶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 법인의 자회사 설립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추가 시 창업에서 제외**하는 기준 도입
- ▶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 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 (3년, 파산/부도인 경우 2년)을 설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창업의 범위 신·구법 비교

개정 전	개정 후('20.10.8)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u>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③ 주요 변경사항 세부내용

↳ ① 창업 불인정 사유에서 '사업승계' 개념을 삭제

- ✓ (예시) A가 타이어 제조사업을 하다 폐업한 후, 폐기될 수 있던 공장을 B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
- (기존) 공장 인수(물적 기준)를 통한 동종업종 사업개시로 창업 불인정
- (개정) A와 다른 B(인적기준)가 사업을 개시하므로 창업 인정

↳ ② 폐업 후 창업의 인정 : 동종업종 3년(부도/파산은 2년)후 인정

↳ ③ 동일 업종 판단 기준 : 세분류 → 세세분류로 확대

- ✓ (예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J63991, 예) 음악파일다운로드 서비스)을 하는 A가 폐업 후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J63999, 예)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동종업종 사업개시로 창업 불인정
- (개정) 이종업종으로 창업 인정

대	중	소	세		세세	분류항목명
J						정보통신업
J	6	3				정보서비스업
J	6	3	9			기타 정보 서비스업
J	6	3	9	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J	6	3	9	9	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J	6	3	9	9	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세세분류 :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5자리 중 5번째 자리

↳ ④ 관계기업 확인을 통한, 창업기업 '창설효과'가 없는 기업 불인정

- (개인 → 법인)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을 운영하는 개인이 친족과 함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거나,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기존 사업과 동종업종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
- ⇒ 기존 기업의 단순 확장(개인→법인)으로 판단, 창업 불인정

- (법인 → 법인) 법인기업이 해당 법인의 임원과 함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는 동시에,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여 새롭게 설립한 법인일 경우 (이종/동종 업종은 무관)

⇒ 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 창업 불인정

* 신청기업에 대한 실소유·실경영자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창설효과'가 없다고 판단

④ 창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 ① (상속/중여)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중여를 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추가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미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② (개인 중소기업 추가설립)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 ③ (폐업 후 창업)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3년 미만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후 2년 미만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④ (개인의 법인 창업)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친족 포함)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을 개시

- ⑤ (법인의 법인 창업)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해당법인과 임원* 포함)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 그 외 기업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 ⑥ (조직변경)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을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현재 '상법'상 법인 간 조직변경으로 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1)혈족 및 4촌 이내의 2)인척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임원"이란** 함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상용사용인을 말한다.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조직변경] 상법**
제242조(합명→합자), 제286조(합자→합명), 제287조의43(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제604조(주식→유한), 제607조(유한→주식),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영리법인→협동조합)

- 1) 혈족: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있음)
- 2) 인척: 배우자의 한쪽과 다른 한쪽의 친족사이의 관계를 이르는 것으로 현행 민법에서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인척의 존수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존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존수에 따른다.

[참고] 창업기업 범위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사 유
<제2조제1항제1호> 사업승계 시 창업으로 불인정 * 사업승계 해석유형 ①상속/증여 ②폐업한 타인공장 인수 ③사업 일부/전부 양수도 ④기존공장 임차 ⑤합병·분할·현물출자 ⑥기존사업장 활용	<제2조제1항제1호> 창업불인정 사유에서 '사업승계' 개념 삭제 - 상속/증여 받아 개인 사업자를 개시한 경우 창업 불인정	○ '사업승계' 개념은 법적정의를 없고 광범위하여 재량해석 여지가 多 → 실무상 사업승계 해석유형 중 명백한 불인정 사유인 상속/증여(무상으로 사업을 이전받음)로 인한 사업 개시의 경우를 첫 번째 창업 예외 사항으로 규정
(사례) ① C가 타이어 제조 사업을 하다 폐업하여 사장될 수 있던 공장을 D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 → (현행) 창업 불인정, (개정안) 창업 인정 ② 아들 B가 아버지 A로부터 무상으로 타이어 제조 사업체를 상속 또는 증여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 → (현행) 창업 불인정, (개정안) 현행과 동일		
	<제2조제1항제2호> 개인사업자가 폐업 않고 개인사업자를 새로 개시할 경우 창업 불인정	○ 창업 불인정 사유로 구분하는 '사업확장' 및 '업종추가' 개념이 불명확하고 재량해석 여지 多 → 인적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신규 개인사업자 설립 여부만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
(사례) ① 중식당 운영 A개인이 일식집 개인사업체(현행 세분류 기준 동종업종)를 새로 설립 → (현행) '업종 추가'로 창업 불인정, (개정안) 인적 판단으로 창업 불인정 ② 중식당 운영 A개인이 한식집 개인사업체(현행 이종업종)를 새로 설립 → (현행) '사업확장'으로 창업 불인정, (개정안) 인적 판단으로 창업 불인정		
<제2조제1항제3호> 폐업 후 동종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면 기간 제한 없이 창업 불인정	<제2조제1항제3호> 폐업 후 3년 이후(부도/파산은 2년) 업종 상관없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 인정	○ 폐업 후 재창업 시, 폐업기간의 장단 구분 없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불합리성 해소 필요 ○ 기존의 유사/동종업종의 지식·경험·네트워크를 활용한 재창업 활성화
(사례) 타이어 제조사업을 하는 A가 폐업 후 기존의 기술,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타이어 재생사업(현행 세분류 기준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 (현행) 계속 창업 불인정, (개정안) 폐업 후 3년 이내 창업 불인정 / 3년 후 창업 / 부도·파산인 경우 2년 후 창업		
<제2조제1항제1호> 사업승계 시 창업으로 불인정	<제2조제1항제4호>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설립 시, 발행 주식	○ 현행 공장 임대인수 등에 따른 창업 여부 결정은 제조업 중심의 물적 기준 판단으로, 공장설립 등이 필요 없는 타 업종이 고려되지 않음

현행	개정	사유
	보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최대주주면 창업 불인정	
(사례) A가 타이어 제조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타이어 재생 사업(현행 세분류 기준 동종업종) 법인 B를 새로 설립 → (현행) 창업 불인정, (개정안) 대표자 및 친족의 지분 보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최대주주인 경우만 창업 불인정		
<제2조제1항제1호> 사업승계 시 동종 사업 개시면 창업으로 불 인정, 이종 사업개시면 창업으로 인정	<제2조제1항제5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하면서 최대출자자로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불인정	○ 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상법(50%↑ 지분소유) 및 중소기업 기본법(최대출자자 & 30%↑ 지분소유) 상의 자회사 기준을 준용하면서, 제2호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유 지분 기준을 30%로 설정
(사례) ① 운영체제 및 보안프로그램 분야(63991) 법인 A가 기술 및 현물출자를 통해 음성 변환서비스업(63999) 법인 B 설립 → (현행) 사업승계를 통한 동종 사업개시로 창업 불인정, (개정안) 법인 A가 법인 B의 최대출자자이면서 30% 이상 지분 소유하는 경우만 창업 불인정 ②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C21101) 법인 C가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완제 의약품 제조(C21210) 법인 D 설립 → (현행) 창업 인정, (개정안) 법인 C가 법인 D의 최대출자자이면서 30% 이상 지분 소유하는 경우만 창업 불인정		
<제2조제2항> 같은 업종 범위: 한 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제2조제2항> 같은 업종 범위: 한국표준 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 지식·경험·네트워크를 활용한 연쇄 창업, 융·복합창업, 재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같은 업종의 범위 확대
(사례) ① 타이어 제조사업(C22111)을 하는 A가 폐업 후 기술·경험·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타이어 재생업(C22112)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 (현행) 동종(세분류)업종 창업 불인정, (개정안) 이종업종으로 창업 인정 ②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J63991, 예 음악파일다운로드서비스)을 하는 A가 폐업 후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J63999, 예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 (현행) 동종(세분류)업종 창업 불인정, (개정안) 이종업종으로 창업 인정 ③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 예, 운영체제 및 보안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A가 폐업 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예, 응용 SW소스코드 개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 (현행) 동종(세분류)업종 창업 불인정, (개정안) 이종업종으로 창업 인정		